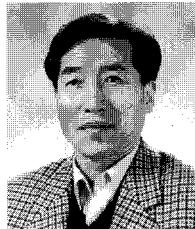


DDA 농업협상 골격과 향후 과제



김충실
(경북대학교 교수)

도하라운드(DDA)의 기본골격은 이미 일년반전에 사실상 구체화 되었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는 강도에 따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대립됨에 따라 결렬에 결렬을 거듭했다. 즉 하빈슨의장안에서 데르베즈안으로 변신을 했지만 결국 오시마 일반 이사회 의장안으로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

이번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은 작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애열사가 자결했던 WTO 각료회의 때 시도했던 안(데르베즈안)보다는 심각한 쟁점들이 완화 또는 삭제된 것으로 다소 두루뭉실한 틀로 평가된다. 그 골격은 시장 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개방의 근간인 관세감축은 관세수준별로 몇 단계로 구분하고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한다.

둘째, 선진국과 후진국 모든 나라에게 스스로 적절한 개수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을 결정케하여 최소한의 농업보호를 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했다.

셋째, 개도국에게는 민감품목은 물론 한단계 더 강한 보호가능품목으로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지정케 하여 TRQ와 관세감축정도도 더욱 우대하도록 했다.

넷째, 국내보조부분은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us), 생산제한적접지불(Blue Box)를 모

두 무역개방을 방해하는 보조로 취급하고 그 보조 총액이 많은 국가일수록 더 많이 감축토록 했다. 동시에 새로운 보조수단으로서 생산제한조건을 삭제한 신규직접지불수단(Blue Box)을 만들어 농업총생산액의 5%까지 보조를 허용했다. 이외에도 허용보조(Green Box)을 사실상 무한정 가능케 했다. 특히 개도국의 생계?영세농을 위한 최소허용보조는 감축을 면제했다.

다섯째, 개도국의 수출보조는 ‘모든형태의 수출보조가 철폐되는 시점까지 유지한다. 특히 개도국의 가격안정과 식량안보확보에 관련되는 국영무역기관(STE)의 독점적 지위유지는 특별히 배려한다. 협상이 그런 것이지만 이러한 골격속에는 우리가 불리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공존한다. 그동안 우리 협상단은 관세상한 반대와 개도국의 TRQ 중량면제를 관철하려고 각각 농산물수입국그룹(G10)과 특별품목관찰개도국그룹(G33)에 관여하면서 안간힘을 썼다. 오시마안의 1차 수정조안이 발표되던 시기를 전후한 며칠간은 밤잠을 설쳐야 했다. 선진국이 못되면서 선진국그룹의 농산 세계최고의 국민소득국들이 주도하는 농산물수입국그룹(G10)과 노선을 같이 하면서 관세상한 철폐와 민감품목을 지정하려 했지만 완벽하지 못했다. 막판 골격조율을 하는 그린룸회의(비공식밀실회의)

에는 어느쪽(G10과 G33)대표로도 참석하지 못 했다. 국력의 한계이자 양다리 통상외교를 멀쳐야하는 우리의 입장 때문이다. 그래도 그동안 우리 협상팀이 농산물 수입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G33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해왔으므로 이번 DDA 협상의 중간평가를 지나치게 비관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셋째, 넷째, 다섯째의 개도국 우대조치는 결코 지금 진행중인 쌀협상의 전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농업통상협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으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 그 이유는 이번 DDA 기본골격이 단순히 수치가 제거된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제통상협상에서 미국과 유럽 공동체(EU)를 양대축으로 하는 국력이 사실상 DDA 협정 내용을 거의 독립적으로 주도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세부 협상내용을 주도해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안되어 온 '하빈슨안', '데르베즈안' 그리고 최근 타결된 DDA기본골격(오시마최종안)을 상호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상 3개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다.(表 1, 표2)).

국내보조분야에서 '새 블루박스' 와 수출경쟁에서 개도국의 국영무역기관 독점적 지위유지 부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면 앞의 3안을 사실상 동일안으

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DDA세부규정과 국별이행 계획서를 준비하는 대응장치 마련이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우리 협상팀(정부)과 농민(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묵묵히 협상을 결집하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특히 최고통치권자는 각별한 정책의지를 협상팀에게 심어주고 농민(단체)은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끝까지 농심(農心)의 공동체로서 협상팀이 모든에너지를 아낌없이 소진하도록 격려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협상원동력은 농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에 있다. 그 합의는 보다 지혜로운 선진각국의 정부와 국민이 기를 쓰고 농업·농촌·농민을 지키려는 의의를 우리도 바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스컴이 어느정도의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장치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전번 오시마안에 의한 DDA 골격 협상시 일본의 대응노력을 거울삼아『DDA협상 대책단』을 즉시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협상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협상실무단』을 협상창구로 활용하면서 이를 자문·지원하는 별도의『협상지원단』을 '장관급 정부대표+농민대표+학계·언론계·소비자대표+국회대표'로 구성하여 가동해야 한다.

〈표 1〉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분야 주요특징

구분	Harbinson 조안	Derbez 조안	기본골격
Blue Box	<p>〈선진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50% 감축하거나 AMS에 포함시켜 감축 <p>〈개도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 33% 감축하거나 이행5차년도에 AMS에 포함시켜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제한" 전제없는 변형된 형태의 Blue Box 도입 • 00~02 농업총생산액의 5% 수준으로 상한설정 후 추가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업협정의 블루박스 요건을 강화 •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 도입 • 과거 일정기간 농업 생산액의 5% 상한 설정
수출분야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농업협정 9.4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이행기간 적용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농업협정 9.4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이행기간 적용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농업협정 9.4조) 유지 • 개도국 수출국영무역에 대해 의무면제

〈표 2〉 시장접근분야

구분	하빈슨 의장안	데르베즈 의장안	오시마 의장 히의안
1. 관세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구간별 감축방식 <선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이하: 평균 40%, 최소 25% - 15~90%: 평균 50%, 최소 35% - 90% 초과: 평균 60%, 최소 45% <개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하: 평균 27%, 최소 17% - 20~120%: 평균 33%, 최소 23% - 120% 초과: 평균 40%, 최소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 그룹으로 나눈 혼합방식 <선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평균 [%], 최소 [%] 감축, UR 방식 적용 (ii) []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 적용 (iii) 나머지 농산물: 무세화 <개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평균 [%], 최소 [%] 감축, UR 방식 적용 (ii) []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 적용 단, 추가적인 이행기간 허용 (iii) 나머지 농산물은 0~5%로 양허 단, 추가적인 이행기간 허용 • 관세상한을 설정하거나, R/O 방식을 통해 TRQ 증량 등 추가적 시장 접근 확대 보장 (단, 일부 NTC품목은 추가적인 유통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구간별 감축방식 (tiered formula) • 관세구간의 수, 범위, 관세감축 방식 등을 추후 협상 • 관세상한은 추후 평가 필요 •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감축
2.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특별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10%, 최소 5% 관세감축 - TRQ 증량면제 대상품목은 자율적으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특별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 최소 [%] 감축, - TRQ 증량 면제 - 단, 현행 양허관세가 [%] 이하인 경우 관세감축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및 개도국(민감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연계 - 적절한 수의 품목을 자율 선정 - 개도국의 민감품목은 수와 시장 개방폭에 있어 우대조치 적용 • 개도국(특별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수의 품목을 자율적으로 선정 - 품목의 범위와 시장개방폭에 신축성 부여
3. TRQ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2001년 평균 소비량의 10%까지 증량 개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2001년 평균 소비량의 6.7%까지 증량 • 품목간 신축성 부여(5~8%) • 개도국 전략품목은 증량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quota 세율 [%] 감축 및 TRQ 증량 또는 신설 가능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TRQ 관리 개선 • In-quota 세율 감축 또는 철폐 • 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대조치 적용
4. SSG 및 S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S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기간(또는 이행기간+2년) 동안 사용 후 폐지 • 개도국 SSG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기간 및 적용방법은 향후 논의 S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의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협의 S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에 대하여 적용

• 농업정책은 국내정책과 통상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 야 하며, 농업 통상정책은 이미 강국의 논리에 외생화 되어

있으므로 국내농업의 장기적 비전 하에 국제통상정책과 국내농업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또한 긴급하다. ⑩